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고 제2017 - 2호

2017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입주 학생 선발 ·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선도해 나아갈 인재 양성의 요람인 『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』의 2017학년도 입주학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2017년 1월 6일

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

1.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7길 10-10
2. 선발인원 : 268명(남학생 134명, 여학생 134명)
3. 입주자격

가. 서울특별시 ·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(이하 “수도권”이라 한다) 소재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이며, 영재관 입주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학생이나 보호자가 제주자치도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거나, 등록기준지 또는 원적이 제주자치도인 자

다만,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도권인 자는 제외

나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 (원격대학, 대학원, 각종학교 제외)

※ 신입생의 경우 합격자 미발표시 대학지원수험표로 지원가능

※ 대학원생 제외

4. 선발기준

: 학업성적(50점) + 생활정도(50점) + 가점(5점,3점) - 감점(5점)

가. 학업성적(50점)

가. 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

나. 재학생은 당해학년 2학기 성적(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함)

다. 휴학생은 휴학 직전학기 성적(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에 한함)

※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제출할 수 없는 신입생은 졸업 해당 학년 성적 제출

나 생활정도(50점)

1) 부·모·본인의 재산을 합친 전년도(2016년도) 재산세 납부액(25점)

2) 부모 전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(25점)

※ 부·모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시 높은 금액으로 적용됨.

※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자인 경우 생활정도 확인서류는 미제출

다. 가점(5점, 3점) :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 그중 높은 점수 적용

1) 『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(5점)

2) 『장애인복지법』 제2조에 따른 장애인(5점)

3) 입주학생 중 학생자율회 등 기숙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이 재입주 신청 시 7퍼센트 범위(남 9명, 여 9명 이내)에서 관장이 추천한 자(5점)

4) 다자녀가구(입주신청일 현재 3자녀 이상 가구)의 자녀(3점)

5) 제주특별자치도내 혁신도시이전 기관 직원의 자녀(해당 직원이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전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인정(3점))

6) 『공무원임용시험령』 제7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채용시험 및 『사법시험법』에 따른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입주생 선발연도 직전에 1차 시험에 합격한 자(3점)

라. 감점(5점)

-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입주중 기숙사 관생수칙에 의한 연간 70점이상 벌점이 누적된 자.

마. 기타사항

- 1) 입주학생 선발은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며, 정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공실 발생 시 입주하는 예비후보자로 함.
- 2) 선발심사 과정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자녀, 생활정도, 학업성적 순으로 선발
- 3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(이하 “수급자 등” 이라 한다), 「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국외에 주소를 둔 재외도민(이하 “국외 재외도민” 이라 한다)과 외국에서 귀국한 특별 전형자(이하 “특별전형자” 라 한다)는 정원의 10% 이내(26명)로 별도 선발하며, 정원 초과 시 추첨에 의함. 다만, 국외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거주지역 도민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정
- 4) 영재관 입주학생은 1가구당 1명 입주를 원칙으로 함. 다만, 소년·소녀 가장인 가구와 신청자가 정시모집 정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예외.

5. 입주학생 자격제한

- 가. 퇴학, 정학 및 휴학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. 다만, 휴학자중 2017학년도 1학기 등록할 자는 제외
- 나. 금지사항 위반 및 벌점에 의하여 퇴실한 자.
- 다. 휴학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매학기 말 2월 이내에 퇴거했던 자.
- 라. 『고등교육법』 제20조제2항에 따른 각급 대학의 수업연한의 최종 학기를 이수한 자

6. 입주 신청 시 구비서류

※ 입주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퇴거조치 될 수 있으며,
재산 및 성적 환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시에는 입사신청이 불가함

가 구비서류

1) 공통 구비서류

- 입주신청서 1부 (입주 신청 홈페이지 내 작성)
-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3자제공 동의서 1부
(입주 신청 홈페이지 내 동의)
- 부·모,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(동일주소지인 경우 1통)
- 부·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(동일내용인 경우 1통)
- 부·모·본인 지방세 세목별(재산세) 과세증명서 각 1부
※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제출
- 부·모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

가입구분	준비서류
부·모 모두 가입 (맞벌이 부부 등)	- 부 :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- 모 : 건강보험 납부확인서
부·모 한분 가입	-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- 미가입자는 <u>자격득실확인서</u> 또는 <u>건강보험증 사본</u>
부·모 모두 미가입	- 부·모 각각 <u>자격득실확인서</u> 또는 <u>건강보험증 사본</u>

-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2) 학업성적 증빙서류

- 신입생
 -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1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(원본대조필) 1부
※ 수학능력시험 성적 제출할 수 없을 시 졸업 해당 학년 성적 제출
 - 대학 합격통지서 또는 대학지원 수험표
- 재학생 : 성적증명서 1부 (전체 학기가 표기된 성적증명서 제출)
- 휴학생 : 휴학 직전학기 성적증명서

나. 기타사항

- 1) 가점특례 대상자인 경우, 가점 증명서류 첨부
- 2) 반드시 각각의 서류는 '원본' 및 '원본대조필' 확인 된 서류 제출
- 3) 신입생이 대학지원수험료를 제출한 경우 입사 등록 시 합격증명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제출
- 4)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7. 입주학생 모집 · 선발예정 일정

가. 접수기간 : `17. 1. 9. ~ 1. 31. 18:00까지

나. 접수방법 : 인터넷 접수 (<http://genius.jpdc.co.kr>)

※ **방문 ·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**

※ **구비서류는 정확한 자료를 이미지(JPG,PNG,GIF) 파일로 변환 (스캔)하여 첨부**

입주학생 결정 발표(통지)	호실추첨 및 입주설명회	등록 기간	입주 기간
◦ 기초생활수급자, 국외재외도민 `17.2.3.(예정)	`17.2.15. (예정) (장소 추후 공지)	`17.2.20. ~2.24. (예정)	`17.2.25.~ (예정)
◦ 재학생 및 신입생 `17.2.10.(예정) (도개발공사, 탐리영재관 홈페이지 게재)			

※ 위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8. 기숙사비(식비 포함) 및 입사비

가. 기숙사비 : 2인실: 150,000원/인/월, 3인실: 120,000원/인/월

나. 입 사 비 : 50,000원/인/년

※ 1학기분(`17.2.25.~8.24.)은 등록 신청시, 2학기분(17.8.25.~18.2.21.)은 17. 8월말까지 납부

9. 주의사항

가. 영재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자는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대학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으로 함.

(1. 대학 2. 산업대학 3. 교육대학 4. 전문대학 6. 기술대학)

※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(원격대학) 및 각종학교의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입사신청 불가능

나. 재산 및 성적 환산에 필요서류 미제출시 입사신청이 불가능

다.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미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.

10. 문의처

가.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인사교육팀 <☎(064) 780-3300>

나.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<☎(02) 2659-0616>

※ 우리 공사에서는 탐라영재관 운영과 함께 소규모 지방학사 시범 사업(동대문구 전농동, 동작구 사당동)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(www.jpdc.co.kr)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문의처 : 제주특별자치도 탐라영재관 (02-2659-0616)>